

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 (제14조제2항 관련)

정비항목		종합건설기계정비업					부분 건설기계 정비업	전문건설기계정비업		
		전기중	굴착기	지게차	기중기	덤프 및 믹서		원동기	유압	타워 크레인
1. 원동기	가. 실린더헤드의 탈착정비	○	○	○	○	○		○		
	나. 실린더 · 피스톤의 분해 · 정비	○	○	○	○	○		○		
	다. 크랭크샤프트 · 캠샤프트의 분해 · 정비	○	○	○	○	○		○		
	라. 연료(연료공급 및 분사)펌프의 분해 · 정비	○	○	○	○	○		○		
	마. 위의 사항을 제외한 원동기부분의 정비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
2. 유압장치의 탈부착 및 분해 · 정비		○	○	○	○	○	○		○	
3. 변속기	가. 탈부착	○	○	○	○	○	○			
	나. 변속기의 분해 · 정비	○	○	○	○	○				
4. 전후차축 및 제동장치정비(타이어식으로 된 것)		○	○	○	○	○	○			
5. 차체부분	가. 프레임 조정	○	○	○	○	○				
	나. 롤러 · 링크 · 트랙슈의 재생	○	○		○					
	다. 위의 사항을 제외한 차체부분의 정비	○	○	○	○	○	○			
6. 이동정비	가. 응급조치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	나. 원동기의 탈 · 부착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○
	다. 유압장치의 탈 · 부착	○	○	○	○	○	○		○	○
	라. 나뭇목 및 다목 외의 부분의 탈 · 부착	○	○	○	○	○	○			○

비고

1. "종합건설기계정비업" 중 "전기중(全機種)"은 모든 건설기계에 대하여 모든 항목의 정비를 할 수 있고, "굴착기", "지게차", "기중기", "덤프 및 믹서"는 해당 건설기계에 한정하여 ○로 표시된 항목의 정비만 할 수 있다.
2. "부분건설기계정비업"은 모든 건설기계에 대하여 ○로 표시된 항목의 정비만 할 수 있다.
3. "전문건설기계정비업" 중 "원동기", "유압"은 모든 건설기계에 대하여 각각 원동기, 유압장치에 관련된 항목으로서 ○로

표시된 항목의 정비를 할 수 있고, "타워크레인"은 이동정비 항목만 정비할 수 있다.

4. 위 표 제1호다목에 따른 크랭크샙프트·캠샙프트의 분해·정비 중 재생·연마는 크랭크연마기(1천600mm 이상)를 설치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체에서만 정비할 수 있다.
5. 종합건설기계정비업 중 "덤프 및 믹서"란 별표 1 제6호 및 제14호에 따른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.
6. 위 표 제6호에 따른 이동정비 중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는 건설기계의 각 장치 및 부속품에 대한 분해·정비 작업을 제외한다.